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5·18민주유공자, 그유족 등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국내 주소 변동 신고를 할 경우 구술 또는 전화로도 갈음할 수 있도록 신상변동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OO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12. 00. ~ 2024. 1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5·18민주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일부개정령안
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·18민주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국내 주소에 대하여는 제3항 본문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변동사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인의 구술 또는 전화를 통한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신상 변동신고 등) ① ~ ③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7조(신상 변동신고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<u>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</u> <u>5·18민주유공자, 그 유족 또는</u> <u>가족의 국내 주소의 변동은 제3</u> <u>항 본문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</u> <u>동이용을 통해 그 변동사항에</u> <u>대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</u> <u>인의 구술 또는 전화를 통한 신</u> <u>고로 갈음할 수 있다.</u>